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절도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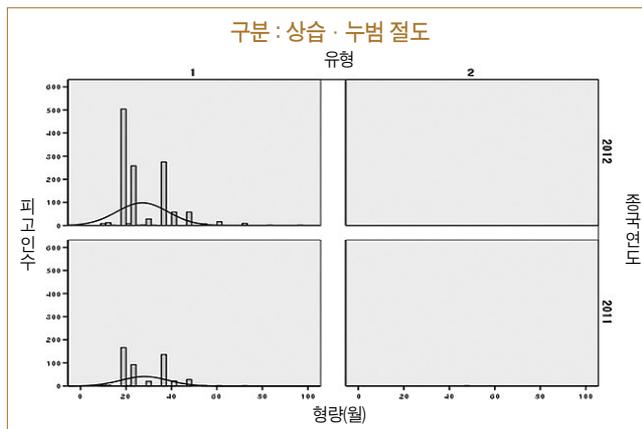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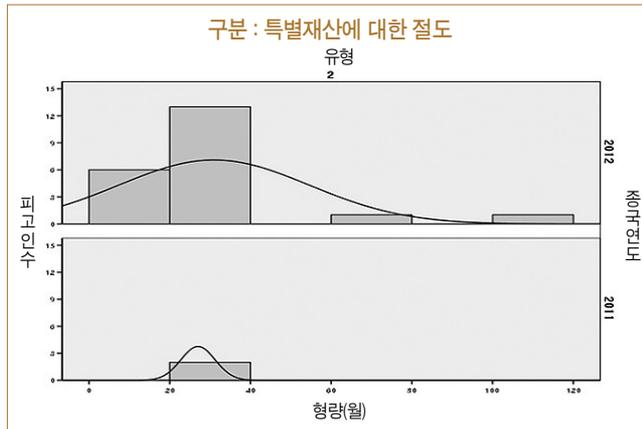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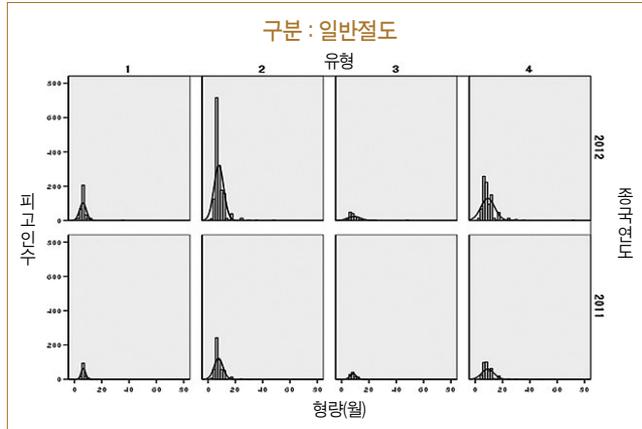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 균	수	평 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감경	62	6.2	123	5.9
		기본	63	6.6	188	6.2
		가중	13	6.8	33	6.7
		합계	138	6.4	344	6.2
	제2유형 (일반절도)	감경	183	6.7	512	7.1
		기본	301	7.8	929	7.8
		가중	65	9.6	139	11.1
		합계	549	7.6	1,580	7.9
	제3유형 (대인절도)	감경	31	7.9	60	7.7
		기본	57	8.5	74	8.7
		가중	13	9.5	17	15.3
		합계	101	8.4	151	9.0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	248	8.1	642	8.0
		기본	89	10.4	179	10.9
		가중	29	14.2	71	15.3
		합계	366	9.2	892	9.2
전체	감경	524	7.4	1,337	7.5	
	기본	510	8.2	1,370	8.1	
	가중	120	10.4	260	12.0	
	합계	1,154	8.1	2,967	8.1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감경	-	-	3	18.7
		기본	2	27.0	17	31.4
		가중	-	-	1	60.0
		합계	2	27.0	21	31.0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 균	수	평 균
	전체	감경	-	-	3	18,7
		기본	2	27,0	17	31,4
		가중	-	-	1	60,0
		합계	2	27,0	21	31,0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	104	23,3	238	21,7
		기본	365	29,0	960	27,5
		가중	10	45,0	50	45,9
		합계	479	28,1	1,248	27,2
	제2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감경	2	48,0	-	-
		기본	-	-	-	-
		가중	-	-	-	-
		합계	2	48,0	-	-
	전체	감경	106	23,8	238	21,7
		기본	365	29,0	960	27,5
		가중	10	45,0	50	45,9
		합계	481	28,2	1,248	27,2

절도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14 공문서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544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공문서 위조·변조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수	97	357	454
		비율	21.4	78.6	100.0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수	9	7	16
		비율	56.3	43.8	100.0
	전체	수	106	364	470
		비율	22.6	77.4	100.0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1유형 (소극적 목적)	수	1	4	5
		비율	20.0	80.0	100.0
	제2유형 (적극적 목적)	수	2	3	5
		비율	40.0	60.0	100.0
	전체	수	3	7	10
		비율	30.0	70.0	100.0
공문서부정행사	수	14	50	64	
	비율	21.9	78.1	100.0	

허위공문서 작성·변개(30.0%) > 공문서 위조·변조(22.6%) > 공문서부정행사(21.9%) 순으로 실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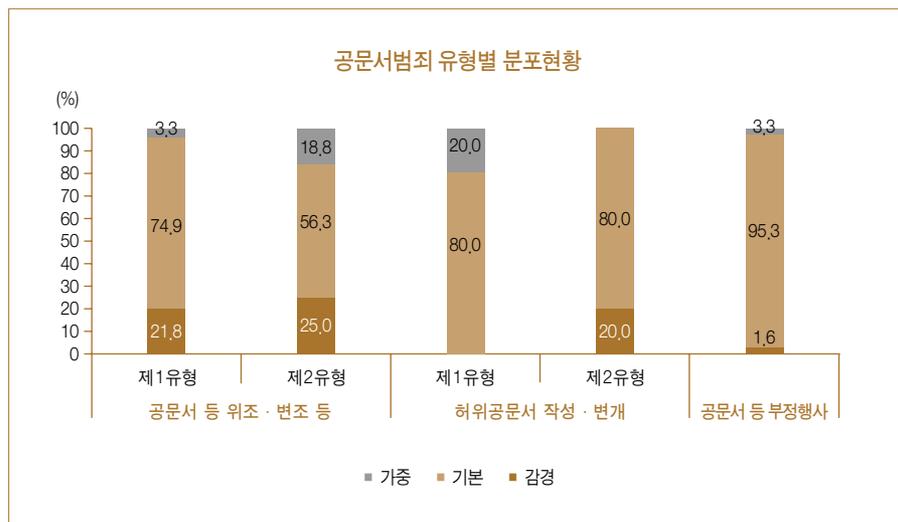
(2) 유형 및 영역구분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수	99	340	15	454
		비율	21.8	74.9	3.3	100.0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수	4	9	3	16
		비율	25.0	56.3	18.8	100.0
	전체	수	103	349	18	470
		비율	21.9	74.3	3.8	100.0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1유형 (소극적 목적)	수	0	4	1	5
		비율	0.0	80.0	20.0	100.0
	제2유형 (적극적 목적)	수	1	4	0	5
		비율	20.0	80.0	0.0	100.0
	전체	수	1	8	1	10
		비율	10.0	80.0	10.0	100.0
공문서 등 부정행사	수	1	61	2	64	
	비율	1.6	95.3	3.1	100.0	



모든 유형에서 기본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은 기본영역(74.3%) > 감경영역(21.9%) > 가중영역(3.8%) 순으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는 기본영역(80.0%) > 감경영역(10.0%) = 가중영역(10.0%) 순으로 나타났다. 공문서 등 부정행사는 대부분 기본영역(95.3%)에 해당하였다.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11. 7.부터 2012. 12.까지의 연도별 평균형량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사건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감경	15	6.0	99	6.8
		기본	68	11.1	340	10.1
		가중	1	6.0	15	20.4
		합계	84	10.2	454	9.8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감경	-	-	4	11.5
		기본	4	9.5	9	20.2
		가중	4	49.5	3	34.0
		합계	8	29.5	16	20.6
	전체	감경	15	6.0	103	7.0
		기본	72	11.1	349	10.4
		가중	5	40.8	18	22.7
		합계	92	11.8	470	10.1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1유형 (소극적 목적)	감경	-	-	-	-
		기본	1	6.0	4	7.0
		가중	-	-	1	10.0
		합계	1	6.0	5	7.6
	제2유형 (적극적 목적)	감경	-	-	1	8.0
		기본	3	10.7	4	8.0
		가중	2	18.0	-	-
		합계	5	13.6	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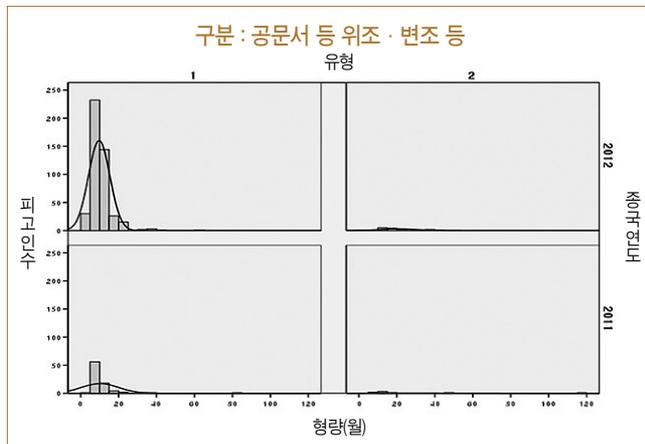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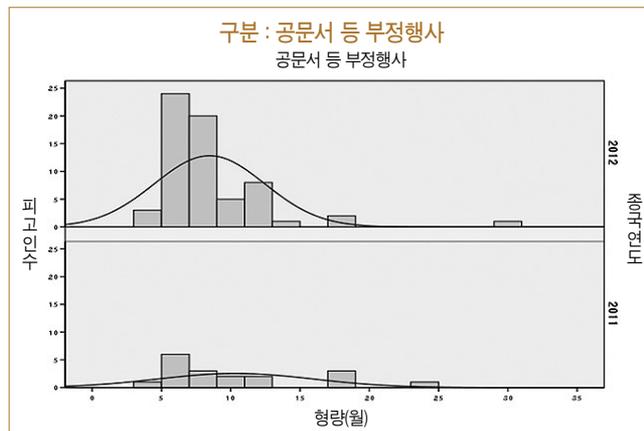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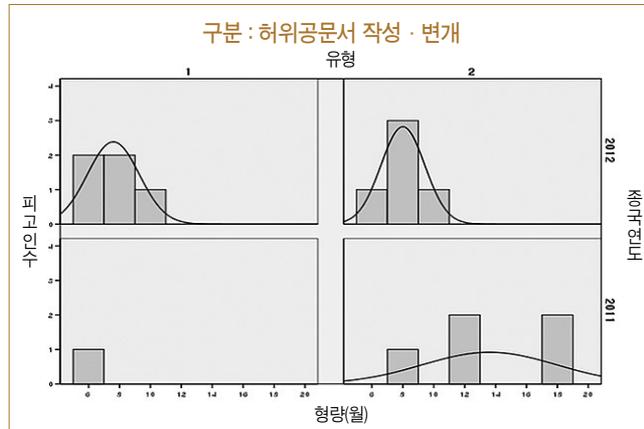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전체	감경	-	-	1	8.0
		기본	4	9.5	8	7.5
		가중	2	18.0	1	10.0
		합계	6	12.3	10	7.8
공문서 등 부정행사		감경	-	-	1	8.0
		기본	18	10.3	61	8.5
		가중	-	-	2	8.0
		합계	18	10.3	64	8.5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경우 제1유형은 2012년(9.8월)과 2011년(10.2월)이 비슷한 형량을 보였으나, 제2유형은 2012년(20.6월)이 2011년(29.5월)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경우 제1유형은 2012년에 형량이 높아졌지만, 제2유형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도 2012년(8.5월)이 2011년(10.3월)에 비해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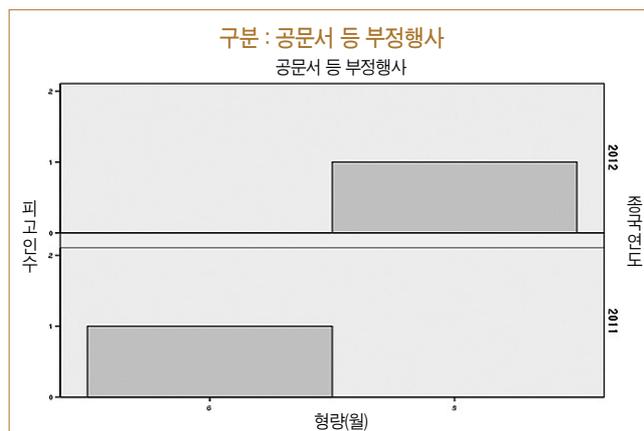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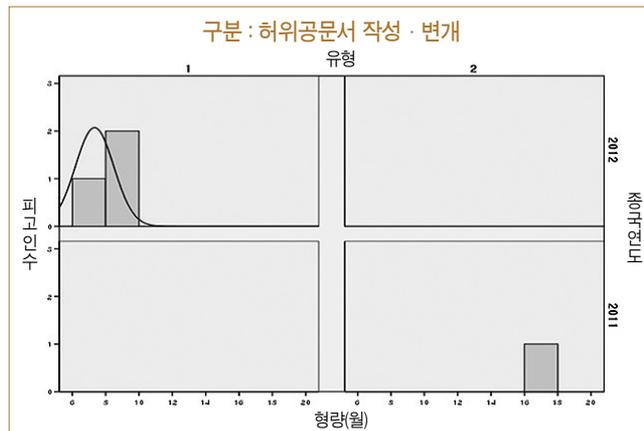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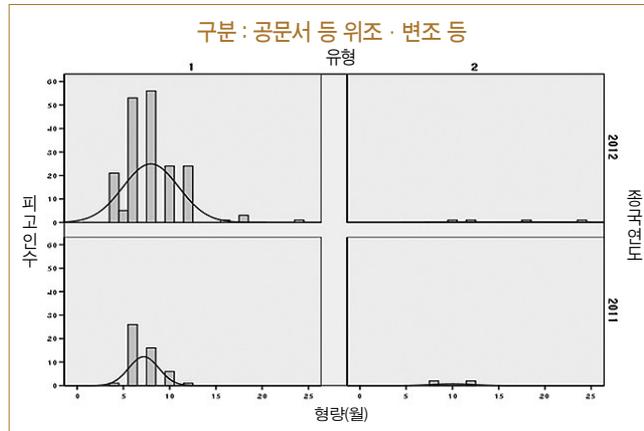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감경	14	6.0	62	6.2
		기본	35	7.7	125	8.7
		가중	1	6.0	1	24.0
		합계	50	7.2	188	8.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감경	-	-	1	10.0
		기본	3	9.3	2	15.0
		가중	1	12.0	1	24.0
		합계	4	10.0	4	16.0
	전체	감경	14	6.0	63	6.3
		기본	38	7.8	127	8.8
		가중	2	9.0	2	24.0
		합계	54	7.4	192	8.1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1유형 (소극적 목적)	감경	-	-	-	-
		기본	-	-	3	7.3
		가중	-	-	-	-
		합계	-	-	3	7.3
	제2유형 (적극적 목적)	감경	-	-	-	-
		기본	-	-	-	-
		가중	1	18.0	-	-
		합계	1	18.0	-	-
	전체	감경	-	-	-	-
		기본	-	-	3	7.3
		가중	1	18.0	-	-
		합계	1	18.0	3	7.3
공문서 등 부정행사	감경	-	-	-	-	
	기본	1	6.0	1	8.0	
	가중	-	-	-	-	
	합계	1	6.0	1	8.0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 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15 사문서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734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사문서 위조·변조 등	수	228	505	733
		비율	31,1	68,9	100,0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제2유형 (적극적 동기)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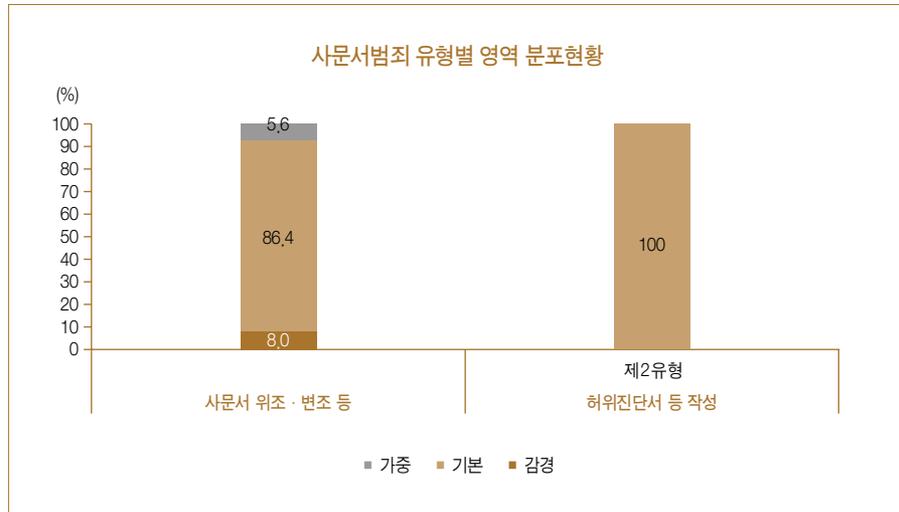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죄는 실형(31.1%) < 집행유예(68.9%)로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진단서 등 작성의 경우는 사건수가 1건에 불과하였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수	59	633	41	733
		비율	8,0	86,4	5,6	100,0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제2유형 (적극적 동기)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전체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죄는 기본영역(86.4%) > 감경영역(8.0%) > 가중영역(5.6%) 순으로 나타났다.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11. 7.부터 2012. 12.까지의 연도별 평균형량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사건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	13	6.8	59	7.8
		기본	196	9.1	633	9.1
		가중	16	18.5	41	17.1
		합계	225	9.6	733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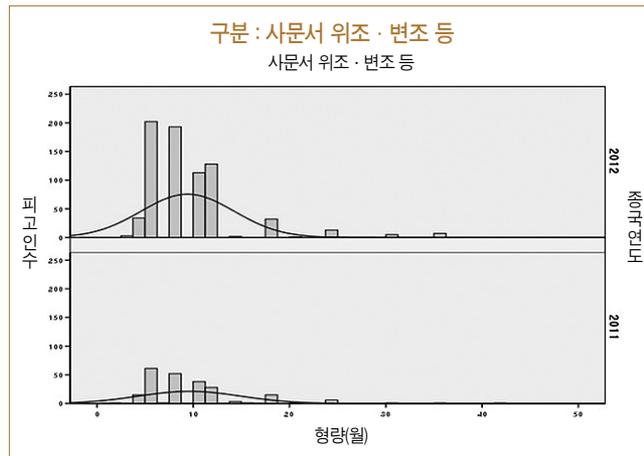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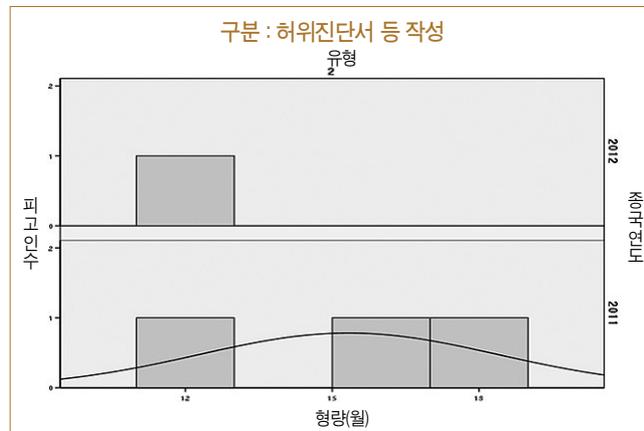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제2유형 (적극적 동기)	감경	-	-	-	-
		기본	2	14.0	1	12.0
		가중	1	18.0	-	-
		합계	3	15.3	1	12.0
	전체	감경	-	-	-	-
		기본	2	14.0	1	12.0
		가중	1	18.0	-	-
		합계	3	15.3	1	12.0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죄는 2011년(9.6월)과 2012년(9.4월)이 거의 비슷한 평균형량을 보였다.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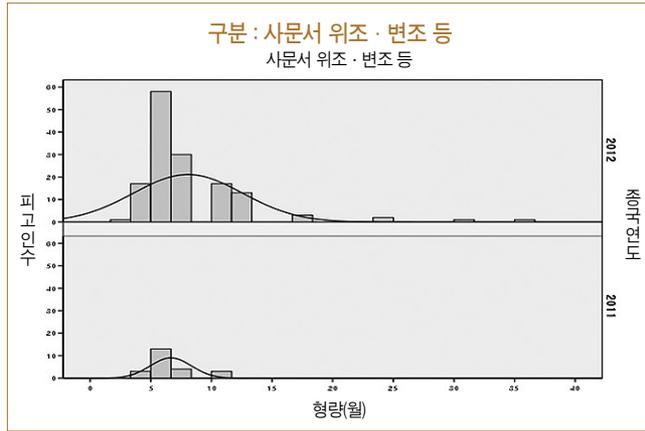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	6	6.0	22	6.0
		기본	17	6.9	111	7.7
		가중	-	-	10	16.8
		합계	23	6.7	143	8.1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제2유형 (적극적 동기)	감경	-	-	-	-
		기본	1	12.0	-	-
		가중	-	-	-	-
		합계	1	12.0	-	-
	전체	감경	-	-	-	-
		기본	1	12.0	-	-
		가중	-	-	-	-
		합계	1	12.0	-	-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 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16 공무집행방해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2,439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수	529	1,332	1,861
		비율	28.4	71.6	100.0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수	31	135	166
		비율	18.7	81.3	100.0
	전체	수	560	1,467	2,027
		비율	27.6	72.4	100.0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수	104	151	255
		비율	40.8	59.2	100.0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제2유형 (공용물파괴)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104	152	256
		비율	40.6	59.4	100.0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수	43	113	156
		비율	27.6	72.4	100.0
	전체	수	43	113	156
		비율	27.6	72.4	100.0

실형 비율은 공용물무효·파괴(40.6%) > 공무집행방해(27.6%) = 특수공무방해치사상(27.6%) 순으로 나타났다. 공용물무효·파괴죄 제2유형의 공용물파괴는 해당사건이 1건이었고,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2유형의 특수공무방해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없었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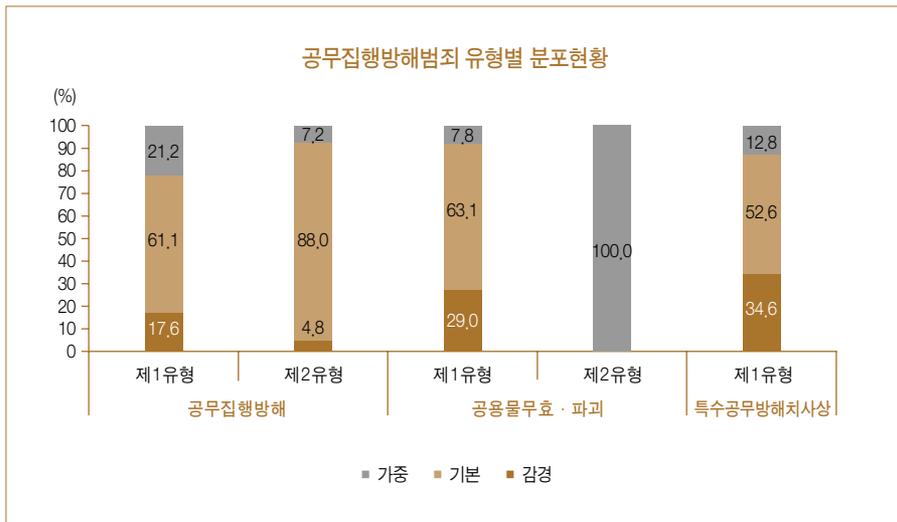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수	328	1,138	395	1,861
		비율	17.6	61.1	21.2	100.0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수	8	146	12	166
		비율	4.8	88.0	7.2	100.0
	전체	수	336	1,284	407	2,027
		비율	16.6	63.3	20.1	100.0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수	74	161	20	255
		비율	29.0	63.1	7.8	100.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제2유형 (공용물파괴)	수	0	0	1	1
		비율	0.0	0.0	100.0	100.0
	전체	수	74	161	21	256
		비율	28.9	62.9	8.2	100.0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수	54	82	20	156
		비율	34.6	52.6	12.8	100.0
	전체	수	54	82	20	156
		비율	34.6	52.6	12.8	100.0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모두 기본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11. 7.부터 2012. 12.까지의 연도별 평균형량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 균	수	평 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	121	6.4	328	7.0
		기본	315	8.1	1,138	8.4
		가중	79	11.6	395	12.4
		합계	515	8.2	1,861	9.0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감경	-	-	8	4.8
		기본	14	10.4	146	9.8
		가중	3	16.0	12	16.7
		합계	17	11.4	166	10.1
	전체	감경	121	6.4	336	6.9
		기본	329	8.2	1,284	8.6
		가중	82	11.8	407	12.5
		합계	532	8.3	2,027	9.1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	42	7.6	74	9.7
		기본	66	10.4	161	9.4
		가중	6	8.7	20	18.4
		합계	114	9.2	255	10.2
	제2유형 (공용물파괴)	감경	-	-	-	-
		기본	1	12.0	-	-
		가중	-	-	1	24.0
		합계	1	12.0	1	24.0
	전체	감경	42	7.6	74	9.7
		기본	67	10.4	161	9.4
		가중	6	8.7	21	18.7
		합계	115	9.3	256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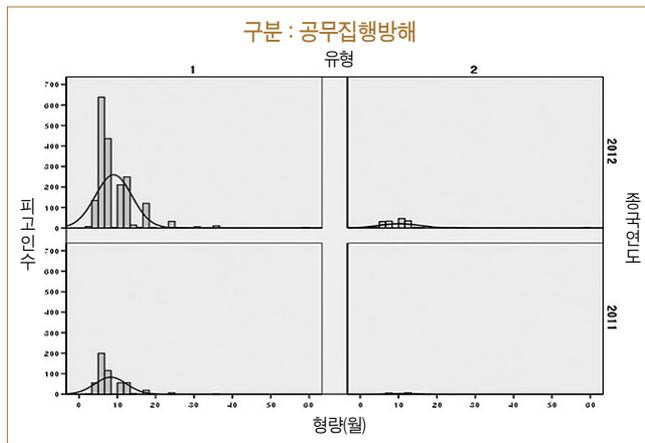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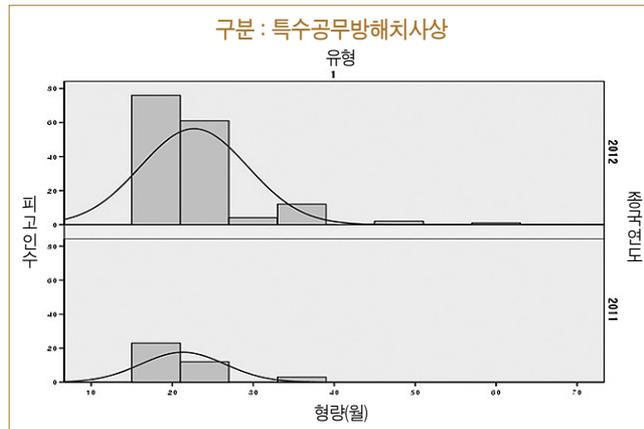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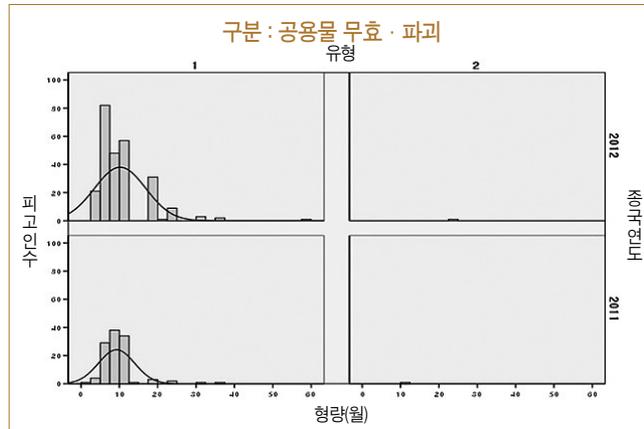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 균	수	평 균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감경	19	18.6	54	20.1
		기본	18	23.3	82	23.6
		가중	1	36.0	20	26.1
		합계	38	21.3	156	22.7
	전체	감경	19	18.6	54	20.1
		기본	18	23.3	82	23.6
		가중	1	36.0	20	26.1
		합계	38	21.3	156	22.7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은 2011년(8.2월)에 비해 2012년(9.0월)의 평균형량이 높았으나, 제2유형은 11.4월에서 10.1월로 평균형량이 낮아졌다. 공용물무효·과과죄의 경우 제1유형은 2012년의 평균형량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역시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평균형량이 높아졌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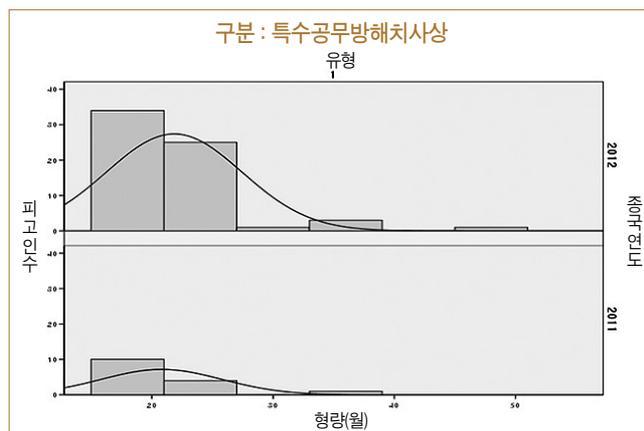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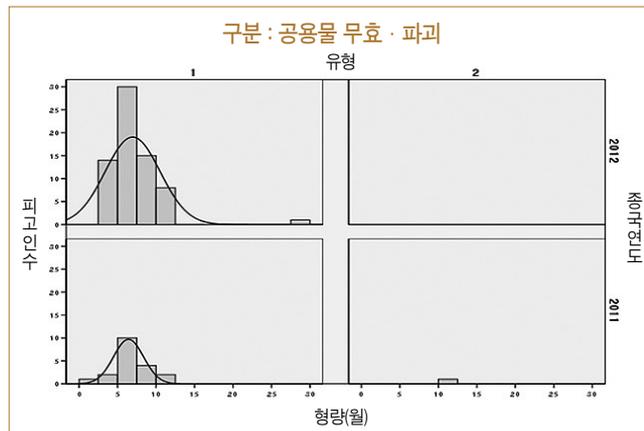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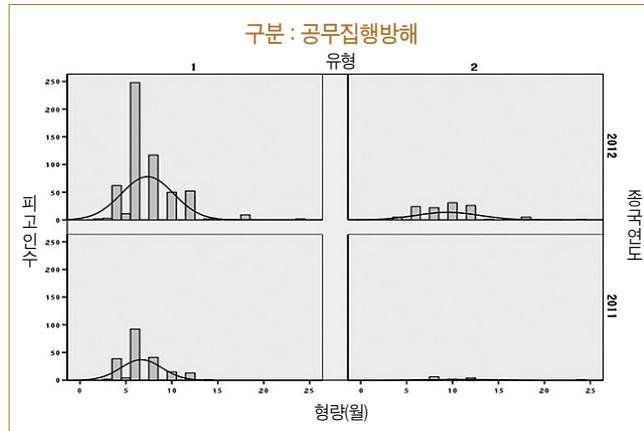
구 분	유 형	영 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 균	수	평 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	63	5.3	145	5.7
		기본	117	6.8	287	6.9
		가중	27	9.4	126	10.3
		합계	207	6.7	558	7.4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 균	수	평 균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감경	-	-	7	4.3
		기본	11	9.5	105	9.7
		가중	2	18.0	5	12.0
		합계	13	10.8	117	9.5
	전체	감경	63	5.3	152	5.6
		기본	128	7.0	392	7.7
		가중	29	10.0	131	10.4
		합계	220	6.9	675	7.7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	8	5.8	24	5.8
		기본	9	7.3	40	6.7
		가중	2	5.0	4	16.0
		합계	19	6.4	68	7.0
	제2유형 (공용물파괴)	감경	-	-	-	-
		기본	1	12.0	-	-
		가중	-	-	-	-
		합계	1	12.0	-	-
	전체	감경	8	5.8	24	5.8
		기본	10	7.8	40	6.7
		가중	2	5.0	4	16.0
		합계	20	6.7	68	7.0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감경	7	18.0	23	20.1
		기본	8	23.3	33	22.2
		가중	-	-	8	25.5
		합계	15	20.8	64	21.8
	전체	감경	7	18.0	23	20.1
		기본	8	23.3	33	22.2
		가중	-	-	8	25.5
		합계	15	20.8	64	21.8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17 식품·보건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389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허위표시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수	4	44	48
		비율	8.3	91.7	100.0
	제2유형 (일반유형)	수	12	41	53
		비율	22.6	77.4	100.0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수	11	21	32
		비율	34.4	65.6	100.0
	전체	수	27	106	133
		비율	20.3	79.7	100.0
유해 식품· 의약품·화장품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수	6	14	20
		비율	30.0	70.0	100.0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수	7	4	11
		비율	63.6	36.4	100.0
	전체	수	13	18	31
		비율	41.9	58.1	100.0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수	1	21	22
		비율	4.5	95.5	100.0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수	28	173	201
		비율	13.9	86.1	100.0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0	2	2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29	196	225
		비율	12.9	87.1	100.0

실형 비율은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41.9%) > 허위표시(20.3%) > 부정의료행위(12.9%)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허위표시의 경우 유형이 높아질수록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 경우 제2유형(63.6%)의 실형 비율이 제1유형(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정의료행위의 경우 제2유형(13.9%) > 제1유형(4.5%) 순으로 나타났고, 제3유형은 사건수가 2건에 불과하였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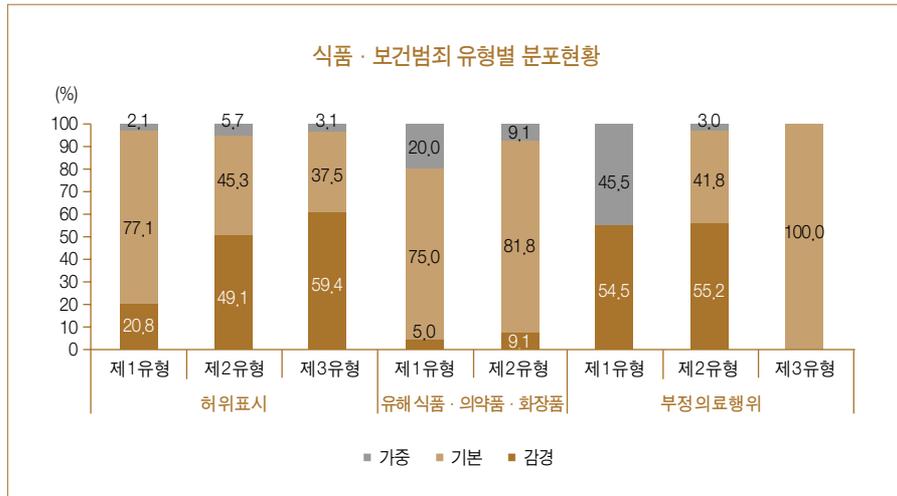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허위표시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수	10	37	1	48
		비율	20.8	77.1	2.1	100.0
	제2유형 (일반 유형)	수	26	24	3	53
		비율	49.1	45.3	5.7	100.0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수	19	12	1	32
		비율	59.4	37.5	3.1	100.0
	전체	수	55	73	5	133
		비율	41.4	54.9	3.8	100.0
유해 식품· 의약품·화장품	제1유형 (가짜 등의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수	1	15	4	20
		비율	5.0	75.0	20.0	100.0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수	1	9	1	11
		비율	9.1	81.8	9.1	100.0
	전체	수	2	24	5	31
		비율	6.5	77.4	16.1	100.0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수	12	10	0	22
		비율	54.5	45.5	0.0	100.0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수	111	84	6	201
		비율	55.2	41.8	3.0	100.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0	2	0	2
		비율	0.0	100.0	0.0	100.0
	전체	수	123	96	6	225
		비율	54.7	42.7	2.7	100.0



허위표시의 경우 제1유형은 기본영역의 비율이 77.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제2유형과 제3유형은 감경영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은 기본영역의 비율이 77.4%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의료행위는 감경영역의 비율이 54.7%로 높게 나타났다.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11. 7.부터 2012. 12.까지의 연도별 평균형량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

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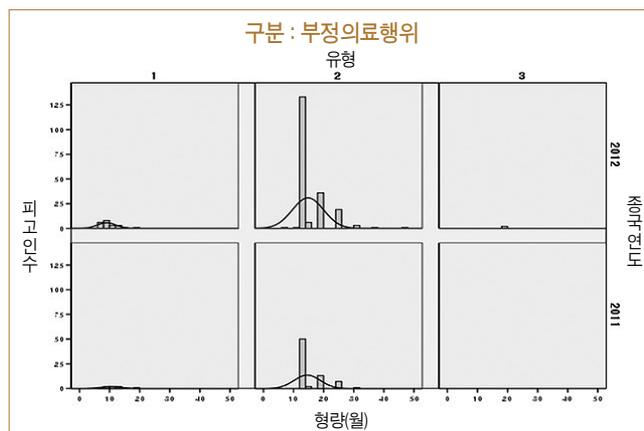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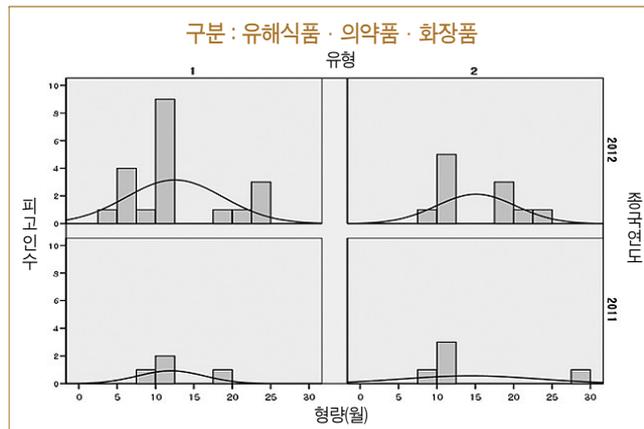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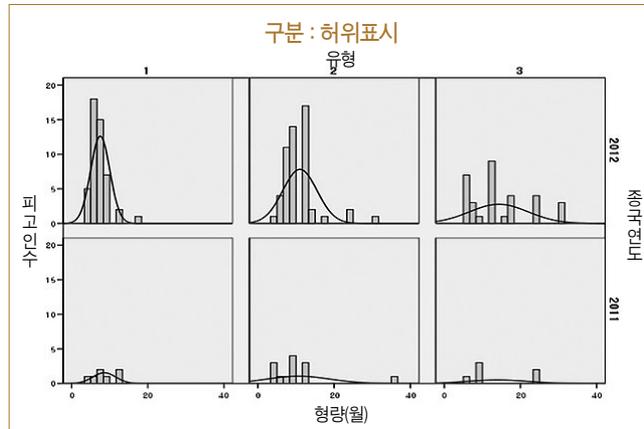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허위표시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감경	2	8.0	10	7.6
		기본	5	8.8	37	7.2
		가중	-	-	1	18.0
		합계	7	8.6	48	7.5
	제2유형 (일반 유형)	감경	5	7.6	26	9.6
		기본	7	9.1	24	12.4
		가중	1	36.0	3	12.7
		합계	13	10.6	53	11.0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감경	2	8.0	19	10.4
		기본	2	10.0	12	20.7
		가중	2	24.0	1	12.0
		합계	6	14.0	32	14.3
	전체	감경	9	7.8	55	9.5
		기본	14	9.1	73	11.1
		가중	3	28.0	5	13.6
		합계	26	10.8	133	10.5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제1유형 (가짜 등의 기준 · 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감경	-	-	1	8.0
		기본	2	10.0	15	12.0
		가중	2	14.0	4	15.5
		합계	4	12.0	20	12.5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감경	-	-	1	12.0
		기본	2	10.0	9	15.1
		가중	3	17.3	1	18.0
		합계	5	14.4	11	15.1
	전체	감경	-	-	2	10.0
		기본	4	10.0	24	13.2
		가중	5	16.0	5	16.0
		합계	9	13.3	31	13.4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	1	6.0	12	7.8
		기본	7	11.1	10	10.4
		가중	-	-	-	-
		합계	8	10.5	22	9.0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	28	12.0	111	13.5
		기본	40	15.7	84	15.8
		가중	5	19.6	6	26.0
		합계	73	14.5	201	14.8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	-	-	-
		기본	-	-	2	18.0
		가중	-	-	-	-
		합계	-	-	2	18.0
	전체	감경	29	11.8	123	12.9
		기본	47	15.0	96	15.3
		가중	5	19.6	6	26.0
		합계	81	14.1	225	14.3

허위표시의 경우 제1유형(8.6월 → 7.5월)은 형량이 낮아졌으나, 제2유형(10.6월 → 11.0월)과 제3유형(14.0월 → 14.3월)은 형량이 높아졌다.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 경우 제1유형(12.0월 → 12.5월)과 제2유형(14.4월 → 15.1월) 모두 전년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타났다. 부정의료행위의 경우 제1유형(10.5월 → 9.0월)은 형량이 낮아졌고, 제2유형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며, 제3유형은 사건수가 2건에 불과하였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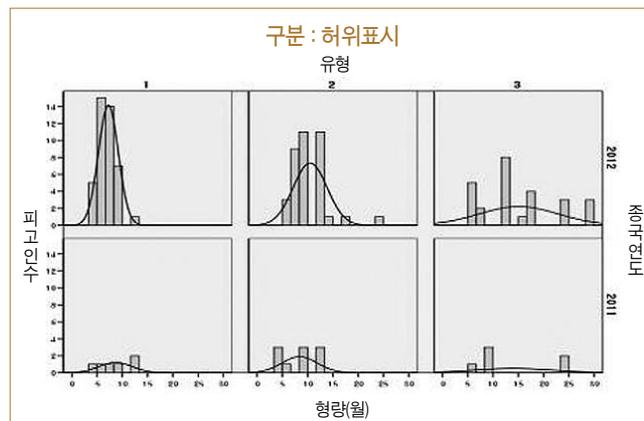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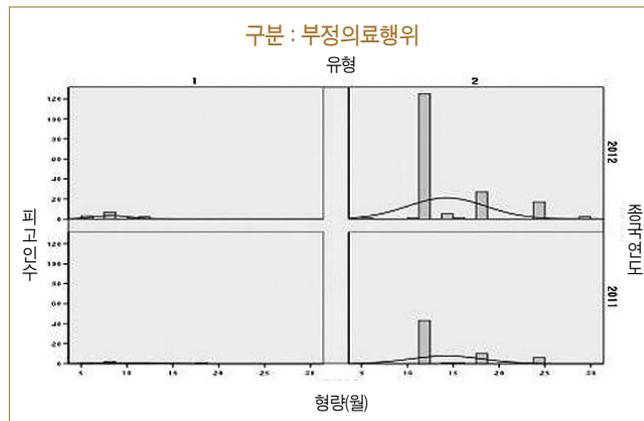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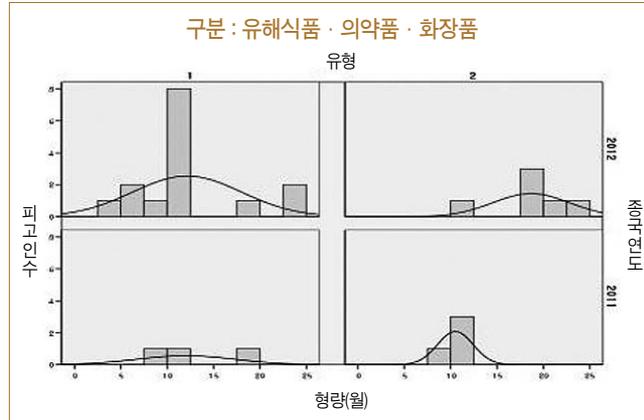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허위표시	제1유형	감경	2	8.0	7	7.1
		기본	4	9.0	35	7.3
		가중	-	-	-	-
		합계	6	8.7	42	7.2
	제2유형	감경	3	6.7	15	9.0
		기본	7	9.1	19	11.3
		가중	-	-	3	12.7
		합계	10	8.4	37	10.5
	제3유형	감경	2	8.0	13	10.2
		기본	2	10.0	12	20.7
		가중	2	24.0	1	12.0
		합계	6	14.0	26	15.1
	전체	감경	7	7.4	35	9.1
		기본	13	9.2	66	10.9
		가중	2	24.0	4	12.5
		합계	22	10.0	105	10.3
유해 식품· 의약품·화장품	제1유형	감경	-	-	1	8.0
		기본	1	8.0	11	12.0
		가중	2	14.0	3	14.0
		합계	3	12.0	15	12.1
	제2유형	감경	-	-	-	-
		기본	2	10.0	5	18.8
		가중	2	11.0	1	18.0
		합계	4	10.5	6	18.7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전체	감경	-	-	1	8.0
		기본	3	9.3	16	14.1
		가중	4	12.5	4	15.0
		합계	7	11.1	21	14.0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	감경	1	6.0	7	8.3
		기본	5	11.2	6	8.3
		가중	-	-	-	-
		합계	6	10.3	13	8.3
	제2유형	감경	26	12.0	103	13.1
		기본	32	16.0	73	15.4
		가중	3	14.7	3	28.0
		합계	61	14.2	179	14.3
	전체	감경	27	11.8	110	12.8
		기본	37	15.4	79	14.8
		가중	3	14.7	3	28.0
		합계	67	13.9	192	13.9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18 마약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2,820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형	집행유예	
투약· 단순소지 등	제1유형 (환각물질)	수	222	55	277
		비율	80.1	19.9	100.0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수	65	204	269
		비율	24.2	75.8	100.0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수	477	311	788
		비율	60.5	39.5	100.0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수	2	13	15
		비율	13.3	86.7	100.0
	전체	수	766	583	1,349
		비율	56.8	43.2	100.0
매매·알선 등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수	4	9	13
		비율	30.8	69.2	100.0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수	898	374	1,272
		비율	70.6	29.4	100.0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수	2	11	13
		비율	15.4	84.6	100.0
	전체	수	904	394	1,298
		비율	69.6	30.4	100.0
수출입·제조 등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수	0	2	2
		비율	0.0	100.0	100.0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수	5	14	19
		비율	26.3	73.7	100.0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수	68	70	138
		비율	49.3	50.7	100.0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전체	수	74	86	160
		비율	46.3	53.8	100.0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형	집행유예	
대량범	제1유형	수	2	2	4
		비율	50.0	50.0	100.0
	제2유형	수	8	0	8
		비율	100.0	0.0	100.0
	제3유형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전체	수	11	2	13
		비율	84.6	15.4	100.0

실형 비율은 대량범(84.6%) > 매매·알선(69.6%) > 투약·단순 소지(56.8%) > 수출입·제조(46.3%)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투약·단순소지 등의 경우 제1유형(80.1%) > 제3유형(60.5%) > 제2유형(24.2%) > 제4유형(13.3%) 순이고, 매매·알선의 경우 제2유형(70.6%) > 제1유형(30.8%) > 제3유형(15.4%) 순이었다. 수출입·제조의 경우는 제1, 4유형은 사건수가 적었고, 제2, 3유형은 제3유형(49.3%) > 제2유형(26.3%) 순이었으며, 대량범은 제1유형(50.0%)을 제외하고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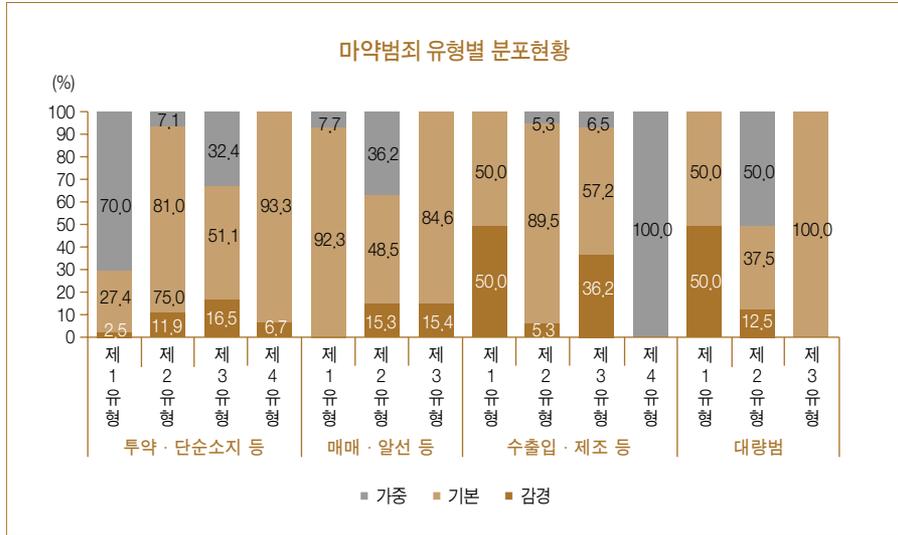
마약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경	기본	가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 (환각물질)	수	7	76	194	277
		비율	2.5	27.4	70.0	100.0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수	32	218	19	269
		비율	11.9	81.0	7.1	100.0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수	130	403	255	788
		비율	16.5	51.1	32.4	100.0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경	기본	가중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수	1	14	0	15
		비율	6.7	93.3	0.0	100.0
	전체	수	170	711	468	1,349
		비율	12.6	52.7	34.7	100.0
매매·알선 등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수	0	12	1	13
		비율	0.0	92.3	7.7	100.0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수	195	617	460	1,272
		비율	15.3	48.5	36.2	100.0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수	2	11	0	13
		비율	15.4	84.6	0.0	100.0
	전체	수	197	640	461	1,298
		비율	15.2	49.3	35.5	100.0
수출입·제조 등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수	1	1	0	2
		비율	50.0	50.0	0.0	100.0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수	1	17	1	19
		비율	5.3	89.5	5.3	100.0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수	50	79	9	138
		비율	36.2	57.2	6.5	100.0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수	0	0	1	1
		비율	0.0	0.0	100.0	100.0
	전체	수	52	97	11	160
		비율	32.5	60.6	6.9	100.0
대량범	제1유형	수	2	2	0	4
		비율	50.0	50.0	0.0	100.0
	제2유형	수	1	3	4	8
		비율	12.5	37.5	50.0	100.0
	제3유형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전체	수	3	6	4	13
		비율	23.1	46.2	30.8	100.0



투약·단순소지 등의 경우 제1유형은 가중영역(70.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2, 3, 4유형은 기본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매·알선 등의 경우는 모든 유형에서 기본영역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수출입·제조 등의 경우는 제2, 3유형에서 기본영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1, 4유형은 사건의 수가 적었다.

대량범의 경우 제1유형은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이 각각 50%로 같았고, 제2유형은 가중영역(50.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제3유형은 사건수가 1건에 불과하였다.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11. 7.부터 2012. 12.까지의 연도별 평균형량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사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투약 · 단순소지 등	제1유형 (환각물질)	감경	1	4.0	7	5.4
		기본	36	8.2	76	9.3
		가중	69	11.4	194	11.9
		합계	106	10.3	277	11.0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감경	21	7.2	32	6.8
		기본	99	9.6	218	11.0
		가중	10	13.6	19	14.1
		합계	130	9.6	269	10.7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	49	8.0	130	8.5
		기본	134	11.2	403	11.4
		가중	71	12.5	255	13.5
		합계	254	10.9	788	11.6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감경	1	12.0	1	10.0
		기본	5	10.0	14	13.4
		가중	-	-	-	-
		합계	6	10.3	15	13.2
	전체	감경	72	7.8	170	8.1
		기본	274	10.2	711	11.1
		가중	150	12.1	468	12.9
		합계	496	10.4	1,349	11.3
매매 · 알선 등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감경	-	-	-	-
		기본	10	10.6	12	10.7
		가중	1	6.0	1	12.0
		합계	11	10.2	13	10.8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	74	10.0	195	10.2
		기본	239	12.6	617	13.4
		가중	168	17.0	460	17.9
		합계	481	13.7	1,272	14.5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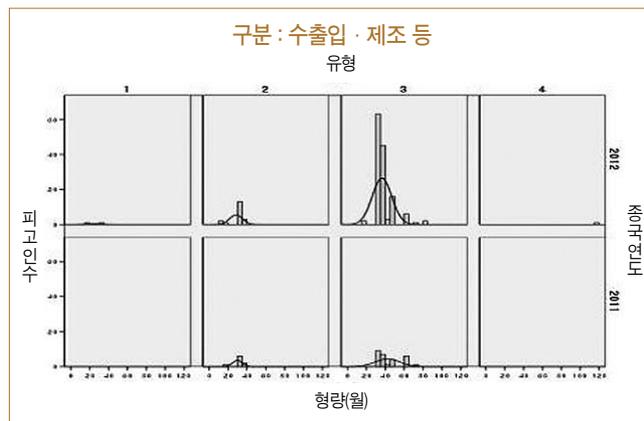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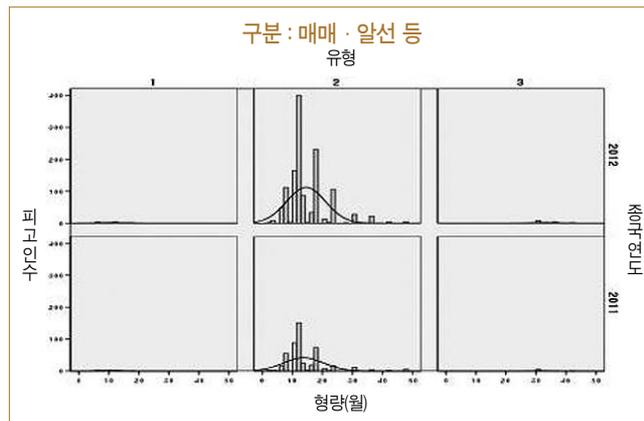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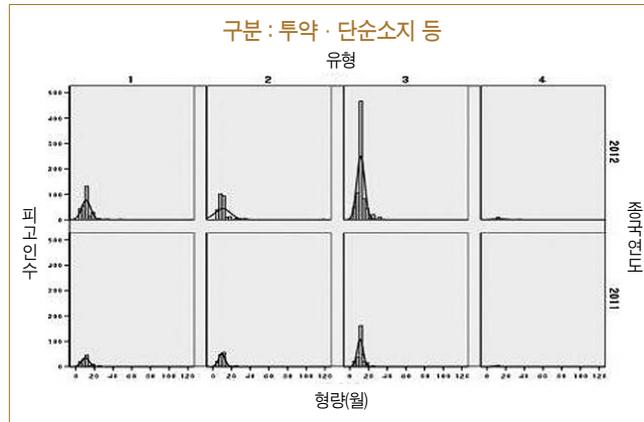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감경	2	30.0	2	33.0
		기본	3	30.0	11	32.7
		가중	1	42.0	-	-
		합계	6	32.0	13	32.8
	전체	감경	76	10.6	197	10.5
		기본	252	12.7	640	13.7
		가중	170	17.1	461	17.9
		합계	498	13.9	1,298	14.7
수출입· 제조 등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감경	-	-	1	30.0
		기본	-	-	1	18.0
		가중	-	-	-	-
		합계	-	-	2	24.0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감경	2	27.0	1	12.0
		기본	7	30.9	17	28.9
		가중	-	-	1	36.0
		합계	9	30.0	19	28.4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감경	6	35.0	50	31.5
		기본	15	37.2	79	37.1
		가중	7	60.0	9	59.3
		합계	28	42.4	138	36.5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감경	-	-	-	-
		기본	-	-	-	-
		가중	-	-	1	120.0
		합계	-	-	1	120.0
	전체	감경	8	33.0	52	31.1
		기본	22	35.2	97	35.4
		가중	7	60.0	11	62.7
		합계	37	39.4	160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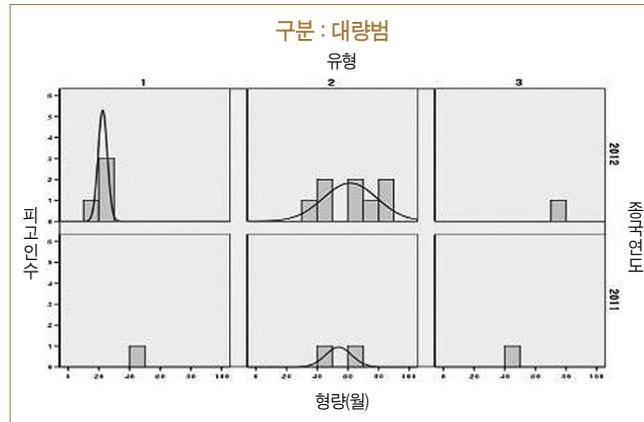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대량범	제1유형	감경	-	-	2	24.0
		기본	1	48.0	2	21.0
		가중	-	-	-	-
		합계	1	48.0	4	22.5
	제2유형	감경	1	48.0	1	48.0
		기본	1	60.0	3	56.0
		가중	-	-	4	69.0
		합계	2	54.0	8	61.5
	제3유형	감경	1	48.0	-	-
		기본	-	-	1	72.0
		가중	-	-	-	-
		합계	1	48.0	1	72.0
	전체	감경	2	48.0	3	32.0
		기본	2	54.0	6	47.0
		가중	-	-	4	69.0
		합계	4	51.0	13	50.3

투약·단순소지 등과 매매·알선 등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형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형량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수출입·제조 등의 경우는 제2, 3유형에서 2012년의 형량이 전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제1, 4유형은 사건의 수가 적었다. 대량범의 경우는 2011년의 사건수가 적어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투약· 단순소지 등	제1유형 (환각물질)	감경	1	4.0	6	5.3
		기본	32	8.0	63	8.3
		가중	59	11.1	166	11.5
		합계	92	10.0	235	10.5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감경	21	7.2	31	6.5
		기본	90	9.5	189	9.8
		가중	7	10.0	10	11.0
		합계	118	9.1	230	9.4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	47	7.9	125	8.4
		기본	120	10.8	354	10.9
		가중	64	12.3	217	12.9
		합계	231	10.6	696	11.1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감경	-	-	1	10.0
		기본	5	10.0	13	13.5
		가중	-	-	-	-
		합계	5	10.0	14	13.3
	전체	감경	69	7.7	163	8.0
		기본	247	10.0	619	10.4
		가중	130	11.6	393	12.3
		합계	446	10.1	1,175	10.7
매매·알선 등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감경	-	-	-	-
		기본	9	9.8	12	10.7
		가중	1	6.0	1	12.0
		합계	10	9.4	13	10.8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	70	10.1	191	10.2
		기본	227	12.2	586	13.2
		가중	153	16.5	430	17.5
		합계	450	13.3	1,207	14.2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감경	2	30.0	2	33.0
		기본	3	30.0	10	33.0
		가중	1	42.0	-	-
		합계	6	32.0	12	33.0
	전체	감경	72	10.7	193	10.4
		기본	239	12.4	608	13.4
		가중	155	16.5	431	17.4
		합계	466	13.5	1,232	14.4
수출입· 제조 등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감경	-	-	1	30.0
		기본	-	-	1	18.0
		가중	-	-	-	-
		합계	-	-	2	24.0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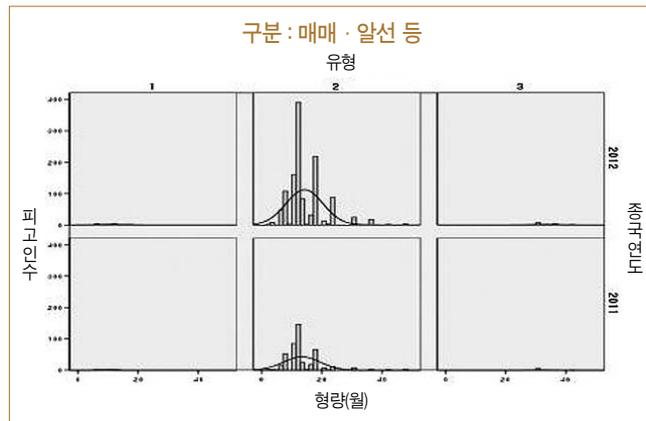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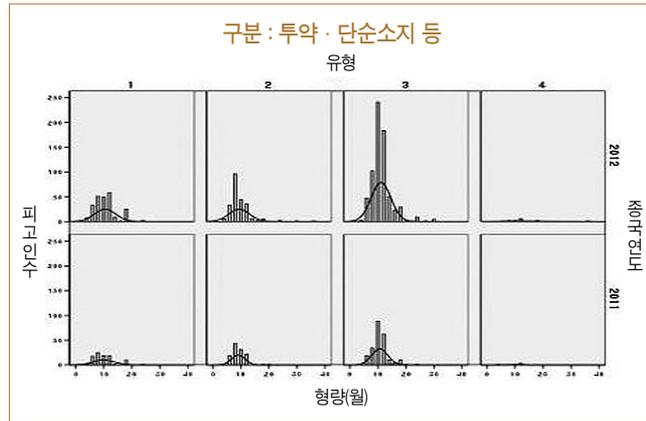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대량범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감경	2	27.0	1	12.0
		기본	7	30.9	15	29.2
		가중	-	-	1	36.0
		합계	9	30.0	17	28.6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감경	6	35.0	49	31.5
		기본	13	36.9	75	37.0
		가중	5	60.0	7	59.1
		합계	24	41.3	131	36.1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감경	-	-	-	-
		기본	-	-	-	-
		가중	-	-	1	120.0
		합계	-	-	1	120.0
	전체	감경	8	33.0	51	31.1
		기본	20	34.8	91	35.5
		가중	5	60.0	9	63.3
		합계	33	38.2	151	35.7
대량범	제1유형	감경	-	-	2	24.0
		기본	1	48.0	2	21.0
		가중	-	-	-	-
		합계	1	48.0	4	22.5
	제2유형	감경	1	48.0	1	48.0
		기본	1	60.0	3	56.0
		가중	-	-	4	69.0
		합계	2	54.0	8	61.5
	제3유형	감경	1	48.0	-	-
		기본	-	-	1	72.0
		가중	-	-	-	-
		합계	1	48.0	1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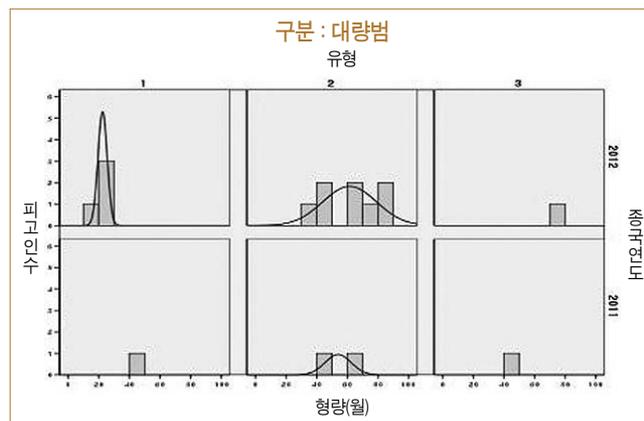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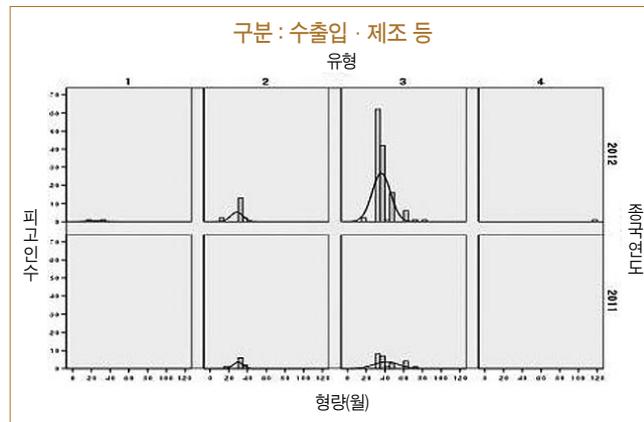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1년 하반기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전체	감경	2	48.0	3	32.0
		기본	2	54.0	6	47.0
		가중	-	-	4	69.0
		합계	4	51.0	13	50.3

마약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19 증권·금융범죄

가. 개관

제3기 대상범죄인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2. 7. 1. 시행되어 분석 대상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그 중 증권·금융범죄는 사건수가 14건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통계분석을 하기에는 사건수가 미미하였다.